

서울중앙지방법원 2017. 6. 2 선고 2016가합571488 판결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전 문

원고 신용보증기금

피고 1. A 주식회사

2. B

3. C

변론 종결 2017. 5. 19.

판결 선고 2017. 6. 2.

주 문

1. 피고 A 주식회사와 피고 B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673,681원 및 그 중 273,596,531원에 대하여 2016. 7. 26.부터 2016. 12. 7.까지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1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3. 가.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별지 부동산목록 제2, 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재산분할약정을 취소한다.

나. 피고 C는 피고 B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2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3항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5. 29. 접수 제117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신용보증약정의 체결

1) 원고는 2009. 4. 14. 피고 A 주식회사(변경 전 상호는 'D 주식회사'였다. 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신용보증한도액 300,000,000원(그 후 270,000,000원으로 변경되었다), 보증기한 2010. 4. 13.(그 후 2016. 4. 8.로 연장되었다)으로 된 신용보증약정(이하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하여 2009. 4. 16. 주식회사 신한은행(이하 '신한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기업운전일반자금대출명목으로 300,000,000원을 대출받았다.

2) 피고 B는 피고 회사의 사내이사로서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의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할 구상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3)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는 ① 신용보증을 받은 주채무자가 기한 내에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증채무의 이행책임이 해제되지 않은 때에 원고가 보증한 채무 중 이행되지 않은 금원에 대하여 주채무를 이행하여야 할 날 또는 보증료가 납부된 기간의 만료일의 양자 중 후일자의 다음날부터 대위변제일 전날 및 주채무 이행일까지의 기간 동안 당해보증건의 보증료율의 연 5/1000의 비율을

더한 율에 의하여 위약금을 정하고, ② 원고가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피고 회사와 피고 B는 그 지급원리금 및 이에 대한 신용보증기금법 제35조 소정의 연 25%의 범위 내에서 원고가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과 이 사건 보증약정에 기한 채권의 집행보전, 행사 및 이를 위한 법적 절차에 소요된 비용 등을 지급하고, ③ 본인이 법인이법인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는 피고 회사 등에게 별도의 최고나 통지 없이도 사전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제6조 제1항 제7, 8호)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원고가 정한 지연손해금의 비율은 그 이행일부터 연 10%이다.

나. 신용보증사고의 발생 및 대위변제

피고 회사는 2012년 이후로 부채비율이 급격히 상승하는 등 경영 상황이 악화되어 2016. 4. 8. 신한은행에 대한 대출원금의 지급을 연체하여 위 대출채무에 대한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였고, 신한은행은 그 무렵 원고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서 정한 신용보증사고가 발생하였음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6. 7. 26. 신한은행에게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대출원리금 273,596,531원을 대위변제하였다(이하 '이 사건 대위변제금'이라 한다).

다. 피고 B의 재산처분행위

- 1) 피고 B는 1986. 3. 18.부터 피고 C와 법률상 혼인관계에 있었으나, 피고 C는 피고 B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년200039호로 이혼 및 재산분할 조정을 신청하였고, 2015. 3. 30. 피고 B의 소유의 별지 부동산목록 제1 내지 3항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 하고, 각 목록의 부동산을 '이 사건 제1부동산'과 같은 방식으로 약칭한다), E SM7 승용차 지분 1/2 중 49/100 지분을 피고 C의 소유로 하고,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된 채권최고액 650,000,000원인 근저당권채무의 실채권액 500,000,000원을 피고 C가 부담하기로 하는 등의 내용의 재산분할약정(이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라 한다)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다.
- 2) 피고 B는 피고 C에게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원인으로 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 3) 한편 피고 B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체결되기 전인 2014. 12. 17. F, G, H에게 별지 부동산목록 제4항 기재 분할 전 부동산(이하 '이 사건 제4부동산'이라 하며, 2015. 4. 27. 면적 변경,

2015. 7. 8. 등록전환, 2015. 8. 18. 분할을 거쳐 I 임야 901m²가 되었다)을 1,280,000,000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150,000,000원은 계약 당일에, 중도금 500,000,000원은 2014. 12. 30.에, 잔금 630,000,000원을 2015. 4. 10. 각 지급받고, 위 잔금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F, G, H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기로 약정하였고, 2015. 4. 10. 위 약정대로 F 등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었다.

4)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하여 2015. 2. 6.자 채권자 주식회사 마하기술, 청구금액 313,200,000원으로 된 가압류등기가 경료되어 있다.

[인정근거] 피고 회사, 피고 B: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 제1항)

피고 C: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7, 12호증, 을다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 회사,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대한 구상금 채무자로서, 피고 B는 그 연대보증인으로서 연대하여 원고에게 275,673,681원{= 이 사건 대위변제금 273,596,531원(=대출원금 270,000,000원 + 이자 3,596,531원) + 납부기간 만료일의 다음날인 2016. 4. 9.부터 대위변제일 전날인 2016. 7. 25.까지 위약금 2,077,150원(=270,000,000원 × 26/1000 × 108/365, 원 미만 버림)} 및 그 중 이 사건 대위변제금 273,596,53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6. 7. 26.부터 위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소장 부분 최종송달일인 2016. 12. 7.까지 약정 지연손해금율인 연 10%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레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피고 C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성립

위 기초사실에 의하면, 2012년부터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는 와중에 다른 채권자의 신청으로 2015. 2. 6. 피고 B 소유의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가압류등기가 경료된 것은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서 제6조 제1항 제8호의 "본인이 법인기업인 경우 그 대표자의 재산 등에 대하여 압류, 가압류 등이 발생하여 본인의 신용상태가 악화될 것이라고 인정된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원고는 위 가압류 무렵에 피고 B에 대한 사전구상권을 취득하였다. 따라서 위 구상금채권은 채권자취소권의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손해행위 성립 여부

1) 피고 B의 채무초과 여부 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7 내지 12호증, 을다 제1, 2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J에 대한 시가감정축탁결과, 이 법원의 한국신용정보원,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각 금융거래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성남시 중원구청 세무과, 수원시 팔달구청 세무과에 대한 각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의 성남시 분당구청 세무과에 대한 사실조회결과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피고 B의 적극재산과 소극재산은 다음과 같다.

나) 적극재산: 이 사건 제1부동산 645,000,000원, 이 사건 제2부동산 83,484,200원, 이 사건 제3부동산 2,000,000원, 이 사건 제4부동산의 매매대금 잔액 630,000,000원(계약금과 중도금의 경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에도 피고 B가 보유하고 있었다는 자료가 없으므로, 이를 적극재산에서 제외한다), E SM7 차량(이하 'SM7 차량'이라 한다)의 지분 1/2

3,350,000원(=6,700,000원 × 1/2)

다) 소극재산: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하나캐피탈 주식회사에 대한 2012. 2. 29.자 대출금채무(이하 '2012. 2. 29.자 대출금채무'라 한다) 17,622,000원, 신한은행에 대한 2014. 4. 10.자 대출금채무(이하 '2014. 4. 10.자 대출금채무'라 한다) 26,322,000원, 이 사건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구상금채무 270,000,00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채무'라 한다), 주식회사 마하기술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 313,200,000원, 수원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280,000,000원, G에 대한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500,000,000원

라) 그렇다면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적극재산은 총 1,363,834,200원(=645,000,000원 + 83,484,200원 + 2,000,000원 + 630,000,000원 + 3,350,000원)인 반면에 소극재산은 1,907,144,000원(=500,000,000원 + 17,622,000원 + 26,322,000원 + 270,000,000원 + 313,200,000원 + 280,000,000원 + 500,000,000원) 가량이었으므로, 피고 B는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다고 할 것이다.

2)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이 상당한 정도를 초과하는 재산분할인지 여부 가) 관련 법리

이혼에 따른 재산분할은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이라는 성격에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성격이 가미된 제도로써,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이혼을 하면서 그 배우자에게 재산분할로 일정한 재산을 양도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를 감소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재산분할이 민법 제839조의2 제2항의 규정 취지에 따른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것이라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로서 채권자에 의한 취소의 대상으로 되는 것은 아니고, 다만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초과부분에 관한 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할 수 없어 취소의 대상으로 될 수 있을 것이다(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6다33258 판결 등 참조).

이혼 당사자 각자가 보유한 적극재산에서 소극재산을 공제하는 등으로 재산상태를 따져 본 결과 재산분할 청구의 상대방이 그에게 귀속되어야 할 몫보다 더 많은 적극재산을 보유하고 있거나 소극재산의 부담이 더 적은 경우에는 적극재산을 분배하거나 소극재산을 부담하도록 하는 재산분할은 어느 것이나 가능하다고 보아야 하고, 후자의 경우라고 하여 당연히 재산분할 청구가 배척되어야 한다고 할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한 결과가 결국 채무의 부담을 정하는 것이 되는 경우에도 법원은 그 채무의 성질, 채권자와의 관계, 물적 담보의 존부 등 일체의 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부담하게 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인정되면 그 구체적인 부담의 방법 등을 정하여 재산분할 청구를 받아들일 수 있다 할 것이다(대법원 2013. 6. 20. 선고 2010므4071, 4088 전원합의체 판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1) 앞서 인정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피고 B와 피고 C의 조정이혼의 성립일이자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체결일인 2015. 3. 30. 당시 피고 B의 재산분할대상 재산은 아래 표와 같다. 피고 B의 적극재산 중 국민연금부분은 이를 산정할 자료가 없고 소액이라 보여져 이를 제외한다.

적극재산	이 사건 제1부동산	645,000,000
이 사건 제2부동산	83,484,200	
이 사건 제3부동산	2,000,000	

적극재산	이 사건 제1부동산	645,000,000
이 사건 제4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630,000,000	
SM7 차량 지분 1/2	3,350,000	
소계	1,363,834,200	
소극재산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500,000,000
2012. 2. 29.자 대출금채무	17,622,000	
2014. 4. 10.자 대출금채무	26,322,000	
이 사건 구상금채무	270,000,000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	313,200,000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합계	780,000,000 (=280,000,000+500,000,000)	
소계	1,907,144,000	
순재산	-543,309,800(=1,363,834,200-1,907,144,000)	

2) 이에 대하여 피고 C는 위 소극재산 중 2012. 2. 29.자 대출금채무, 2014. 4. 10.자 대출금채무, 이 사건 구상금채무의 합계인 313,944,000원은 피고 B 개인의 채무로서 재산분할대상 재산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부부가 이혼하는 경우 일방이 혼인 중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는 일상가사에 관한 것 이외에는 원칙적으로 그 개인의 채무로서 청산의 대상이 되지 않으나 그것이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인 때에는 청산의 대상이 되며, 그 채무로 인하여 취득한 특정 적극재산이 남아있지 않더라도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혼인 중의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는 것으로 보아 청산의 대상이 되고(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참조), 정상적인 혼인생활 중에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하여 상대방도 용인하였던 채무는 결국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공동재산의 형성에 수반하여 부담한 것이라고 평가되어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5. 8. 19. 선고 2003므1166, 1173 판결 참조). 위 법리에 비추어 보건대 2012. 2. 29.자 대출금채무와 2014. 4. 10.자 대출금채무가 다른 채무에 비해 비교적 소액으로 보이는 점, 피고 C가 달리 위 각 채무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반증을 제출하지 아니하는 점,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피고 B가 부부의 주 수입원으로 영위하였던 피고

회사의 사업상의 거래관계에서 발생한 채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2012. 2. 29.자 대출금채무, 2014. 4. 10.자 대출금채무,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피고 B가 공동재산의 형성·유지에 수반하여 부담한 채무 내지는 그 채무부담행위가 부부 공동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거나 일상가사에 관한 것이라고 보여지므로, 위 각 채무액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그렇다면 이 사건에서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순재산은 (-)543,309,800원인데, 통상의 재산분할정도 등을 고려할 때 피고 C의 기여도는 50%라고 봄이 상당하고, 그에 따라 피고 C에게 귀속될 재산가액의 한도는 재산분할대상 순재산의 50%에 해당하는 (-)271,654,900원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렇다면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볼 때 피고 B와 피고 C 사이의 재산분할은 소극재산의 총액이 적극재산의 총액을 현저히 초과하므로 종국적으로는 피고 B가 부담하는 채무를 피고 C가 분담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이나,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을 통하여 피고 C가 분할받은 순재산은 233,767,200원(=이 사건 제1부동산 645,000,000원 + 이 사건 제2부동산 83,484,200원 + 이 사건 제3부동산 2,000,000원 + SM7 차량 49/100 지분 3,283,000원 - 이 사건 제1부동산 근저당권부 피담보채무 500,000,000원)인 반면 피고 B가 분할받은 순재산은 (-)777,077,000원(=이 사건 제4부동산 매매대금 잔액 630,000,000원 + SM7 차량 1/100 지분 67,000원 -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가압류채무 313,200,000원 - 이 사건 제4부동산에 관한 근저당권부 채무 합계 780,000,000원 - 2012. 2. 29.자 대출금채무 17,622,000원 - 2014. 4. 10.자 대출금채무 26,322,000원 - 이 사건 구상금채무 270,000,000원)인바, 피고 C가 재산분할로 분담하여야 할 채무는 분담하지 않은 채 위 재산분할대상이 되는 재산 중 오로지 적극재산만을 재산분할로 취득하여 상당한 재산가액인 (-)271,654,900원에 비해 505,422,100원{=233,767,200원 - (-)271,654,900원}을 초과하여 재산분할을 받은 것은 사실상 그 전부에 관하여 상당한 정도를 벗어나는 과대한 재산분할로서 적법한 재산분할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그 전부가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

마. 피고 C의 선의 여부

- 1) 피고 C는, 피고 C가 피고 회사 운영에 참여를 한 적이 없고 피고 회사의 경영 상황이 악화되고 있는지를 전혀 알 수 없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2) 채무자의 제3자에 대한 재산처분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는 것이므로 그 악의가 없다는 증명책임은 수익자에게 있는바, 피고 C가 선의의 수익자임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바.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범위

- 1)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가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사해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 그 사해행위는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범위 내에서만 성립한다고 보아야 하므로, 사해행위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경우, 사해행위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의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일반 채권자들의 공동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을 명하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이고, 그와 같은 가액 산정은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경우: 가액배상

갑 제8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이 사건 변론종결시의 시가는 670,000,000원임이 인정되며,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당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설정되어 있다가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 이후 2015. 11. 27. 말소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실제 피담보채무가 500,000,000원인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렇다면 이 사건 제1부동산의 공동담보가액은 이 사건 제1부동산의 시가에서 위 근저당권의 실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 170,000,000원(=670,000,000원 - 500,000,000원)이므로,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의 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1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145,000,000원의 한도 내에서 이를 취소함이 상당하고, 나아가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원고에게 14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민법이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 사건 제2, 3부동산의 경우: 원물반환

피고 B와 피고 C 사이에 이 사건 제2, 3부동산에 관하여 2015. 3. 30. 체결된 이 사건 재산분할약정은 사해행위로서 취소되어야 하고, 그 원상회복으로서 피고 C는 피고 B에게 이 사건 제2부동산에 관하여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광주등기소 2015. 5. 4. 접수 제3552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이 사건 제3부동산에 관하여 창원지방법원 창녕등기소 2015. 5. 29. 접수 제11778호로 마친 지분전부이전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박광우

판사주은아

판사이은상

별지